#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2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윤준병・박민규・주철현

조계원 • 정동영 • 박홍배

이워택•박희승•허 영

김우영 · 김태선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 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 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

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4조제1항).
-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4조).
- 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2).
- 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4).
- 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5).
- 바.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
-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2).
- 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3).

자. 이전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새 및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제2호가목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25년"을 "2030년" 으로 한다.

제78조의2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	특례) ①
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25를 <u>2025년</u> 12월	<u>2030년</u>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	
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	
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u>.</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	3
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	

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u>2025년</u>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3. (생 략)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u>2030년</u>
4
<u>2030년</u>
  1. ~ 3. (현행과 같음)
⑤
⑤

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 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 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 3. (생략)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u>2030</u>
<u>년</u>
1. ~ 3.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다.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 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2. (생략)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 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 기발사업시행자

<u>030년</u>
1
<u>2030년</u>
2. (현행과 같음) 3
<u>2030년</u>

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생략)

② (생략)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 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 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 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 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를 추징한다.

1. • 2.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
한 감면) ①
F (2000)
<u>2030년</u>
,
<b>_</b> _
1.•2. (현행과 같음)
1. 2. ( C O ) E D /

#### ② (생략)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 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한다.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를 면제한다.
-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 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 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 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1. <u>2030년</u>
2
<u>2030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 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 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 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 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 징한다.

###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 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

①
<u>20</u>
<u> 30년</u>
<u>30년</u>
<u>30년</u>
<u>30년</u>
<u>30년</u>
<u>30년</u>  1. · 2. (현행과 같음)

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

1
<u>2030년</u>
·.
2
<u>2030년</u>

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 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 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 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

③
<u>.</u>
1
<u>2030년</u>

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 세를 추징한다.

가. · 나. (생 략)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나.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 (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2030년
<u> 2000 E</u>
_
•
가.•나. (현행과 같음)
(4)
4

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생략)
-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 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 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 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생략)

- ⑤ ~ ⑧ (생 략)
-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현행과 같음) 	
/   .	•	
	2030년	
나		
,	· 	
		2030
	<u>년</u>	
다	. (현행과 같음)	
<u>(5)</u> ~	~ ⑧ (현행과 같음)	
9 -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 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 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 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 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 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45조의21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

<u>2030년</u>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u>2030년</u>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 7 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 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 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 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 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 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 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 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 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면) ①
<u>2030년</u>
·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2. (생략)
-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 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 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 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 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 2. (생략)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 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

,
1. · 2. (현행과 같음)
② 2030년
··
1. • 2. (현행과 같음)
3

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 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 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 면한다.

가.·나. (생 략)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 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

,
1. <u>2030년</u>
_
 가.·나. (현행과 같음)
2. <u>2030년</u>
2. <u>2000 t.</u>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 나. (생 략)

④ ~ ⑤ (생 략)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 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 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 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 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 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u>2025년</u> 12월 31일까 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④ ~ ⑸ (현행과 같음)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
전에 대한 감면) ①
<u>2</u>
<u>030년</u>
②
_
<u>2030년</u>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 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④ ~ ⑥ (생 략)

③
<u>2030년</u>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